

감정평가서

건명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03-11 대명파크타운 제1층 제102호 소재 물건 (2024-10083-A02)
의뢰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장
감정서번호	SY240925-520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선영감정평가사사무소

(부동산)감정평가표

Page : 1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박영조

감정평가액	일억팔백만원정 (₩108,000,000.-)					
의뢰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장		감정평가 목 적	공매(국세, 지방세)		
제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주식회사 미트다이어리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거	귀제시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		2024.09.27	2024.09.27	2024.10.04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구분건물	1세대	구분건물	1세대	-	108,000,000
		이	하	여	백	
	합 계					₩108,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소재 “연희동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대명파크타운 제1층 제102호 다세대주택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의 공매를 위한 감정평가 건임.

2. 대상물건의 개요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03-11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31번길 10]						
건물명 동호수	대명파크타운 제1층 제102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사용승인일	1994.07.07		
구 분	전유 면적 (㎡)	공용 면적 (㎡)	전유 +공용 (㎡)	대지권 면적 (㎡)	용도		
기호	층 /호수				공부	현황	
가	제1층 제102호	44.97	5.46	50.43	26.9555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

3. 감정평가 근거 및 기준가치

가. 감정평가 근거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 및 감정평가 제이론에 의거 감정평가하였음.

나. 감정평가 기준가치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거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으며, 여기서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함.

4.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기본적사항의 확정)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자인 2024년 09월 27일로 하였음.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에 따라 2024년 09월 27일에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음.

5.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가.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함이 원칙이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음.

나.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감정평가 방법

가. 감정평가 방식

감정평가의 방식에는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원가방식)이 있고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과 공시지가기준법(비교방식)이 있으며,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수익방식)이 있음.

나. 일괄감정평가 원칙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대지사용권(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함이 원칙임.

다.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주된 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목적, 대상부동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식에 의한 시산가액 간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함.
- 2) 다만, 원가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거래되는 시장현실에 있어서 원가의 합리적인 배분이 곤란하여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며, 수익환원법은 본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원 또는 할인하는 과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적용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다른 방법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된 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그 밖의 사항

가. 임대관계

기준시점 현재 현장조사시 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인해 임대확인이 어려운바, 임대조사는 미상으로 처리하였음.

나. 기타 등

- 본건 내부구조확인 은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으로 인하여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외형조사와 인근 유사물건의 통상적인 내부상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공매 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면적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함.

2. 비교사례 선정

가. 인근 유사부동산 거래사례

[출처: 감정평가정보체계]

사례	소재지	건물명	동/호수	전유 면적 (㎡)	대지권 면적 (㎡)	거래금액 (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1	서구 연희동 698-**	○○○	○○동 제3층 제3○○호	40.72	28.59	100,000,000	2024.04.04
							1996.01.05
2	서구 연희동 704-**	○○○	○○동 제2층 제2○○호	40.58	30.12	95,000,000	2024.04
							1994.08.20
3	서구 연희동 702-**	○○○	○○동 제4층 제4○○호	39.77	25.05	84,000,000	2024.01
							1994.08.27

나. 비교사례 선정

인근지역내 비교 가능한 거래사례로서, 대상물건과 물적 유사성이 높은 사례#1을 선정함.

3. 사정보정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됨(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시점수정

가. 시점수정치의 결정방법

일반적으로 구분건물의 시점수정은 용도에 따라 각 용도의 특성에 맞는 지수를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함. 본건의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대상 부동산의 특성 및 가격추이가 잘 반영된 연립·다세대주택-매매가격지수(출처: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를 활용하여 시점수정치를 산정하되, 기준시점 현재의 가격지수가 발표되지 않는 상태로서 발표된 시점까지의 지수만을 적용함.

나. 시점수정치 산정(2021.06= 100기준)

(인천광역시)

구 분	지 수	비 고
본건 기준시점 가격지수	96.5	2024년 08월
거래사례의 거래시점 가격지수	97.3	2024년 03월
시점수정치	$\frac{96.5}{97.3} \approx 0.99178$	

5. 가치형성요인비교

가. 가치형성요인 비교항목

요인구분	세부항목
단지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풍치,경관 등) 등
단지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호별 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구 분		단지외부 요인	단지내부 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기호	동 /호수					
가	제1층 제102호	1.00	0.99	1.00	1.00	0.990
의 견						
단지외부요인		본건은 사례와 비교하여 대중교통의 편리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등 단지외부요인이 유사함.				
단지내부요인		본건은 사례와 비교하여 건물의 노후도 등 단지내부요인이 열세함.				
호별요인		본건은 사례와 비교하여 층별 효용, 전유부분의 면적, 형태, 내부 평면방식 등 호별요인에서 유사함.				
기타요인		본건은 사례와 비교하여 기타요인이 유사함.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구분		비교사례 거래금액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면적비교 (대상/사례)	산출가격 (원)
기호	동 /호수						
1	제1층 제102호	100,000,000	1.00	0.99178	0.990	$\frac{44.97}{40.72}$	108,434,050

III. 참고가격 자료

1. 시세수준

구 분	시 세 수 준
동유형부동산의 시세	90,000,000원 ~ 110,000,000원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인근 감정평가전례

[출처: 협회 감정평가정보]

기호	소재지	건물명	동/호수	전유면적 (㎡)	감정평가액 (원)	감정평가 목적	기준시점
							사용승인일
1	서구 연희동 703-**	○○○	○○동 제2층 제2○○호	46.95	107,000,000	경매	2023.12.13
							1994.07.21
2	서구 연희동 701-**	○○○	○○동 제2층 제2○○호	59.48	138,000,000	경매	2024.09.02
							2002.05.01
3	서구 연희동 706-**	○○○	○○동 제4층 제4○○호	41.80	83,000,000	경매	2024.03.08
							1994.11.28

Ⅳ.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1. 감정평가액 결정

구분		전유면적 (㎡)	대지권면적 (㎡)	산출가격 (원)	감정평가액 (원)	비고
기호	층 /호수					
가	제1층 제102호	44.97	26.9555	108,434,050	<u>108,000,000</u>	

2.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상기 참고가격 자료(감정평가사례, 인근 부동산 탐문조사에 의한 가격수준, 거래 사례 등)에 의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비준가액으로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구분건물)평가명세표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03-11				
건 물 명		대명파크타운 제1층 제102호				
기 호	구 분	지 목 및 용 도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1동의 건물의 표시]	다세대주택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03-11					
	대명파크타운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31번길 1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1층		100.86			
	2층		100.86			
3층	100.86					
4층	95.14					
지층	110.86					
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			108,000,000	비준가액
	제1층 제102호		44.97	44.97		
	철근콘크리트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인천광역시		266.5			
	서구 연희동 703-11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37.323			
	대지권의비율 : 1.		266.5x-----	26.9555		
			369			
합 계				₩108,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4. 위생,냉난방시설등	7. 도시계획 및 기타 공법관계
2. 교 통 상 황	5.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8. 공부와의차이
3. 건물의구조 및 이용상태	6. 도로상태 및 주차장시설등	9. 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소재 “연희동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유형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인근에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 통 상 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아시아드경기장역”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및 이용상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내 제1층 제102호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창 호 : 샷시 창호임.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4. 위생, 냉난방시설 등

위생설비, 상·하수도 설비, 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구분건물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4. 위생,냉난방시설등	7. 도시계획 및 기타 공법관계
2. 교통 상황	5.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8. 공부와의차이
3. 건물의구조 및 이용상태	6. 도로상태 및 주차장시설등	9. 임대관계 및 기타

5.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정방형 평지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6. 도로상태 및 주차장시설등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7. 도시계획 및 기타 공법관계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연희3지구),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749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8. 공부와의 차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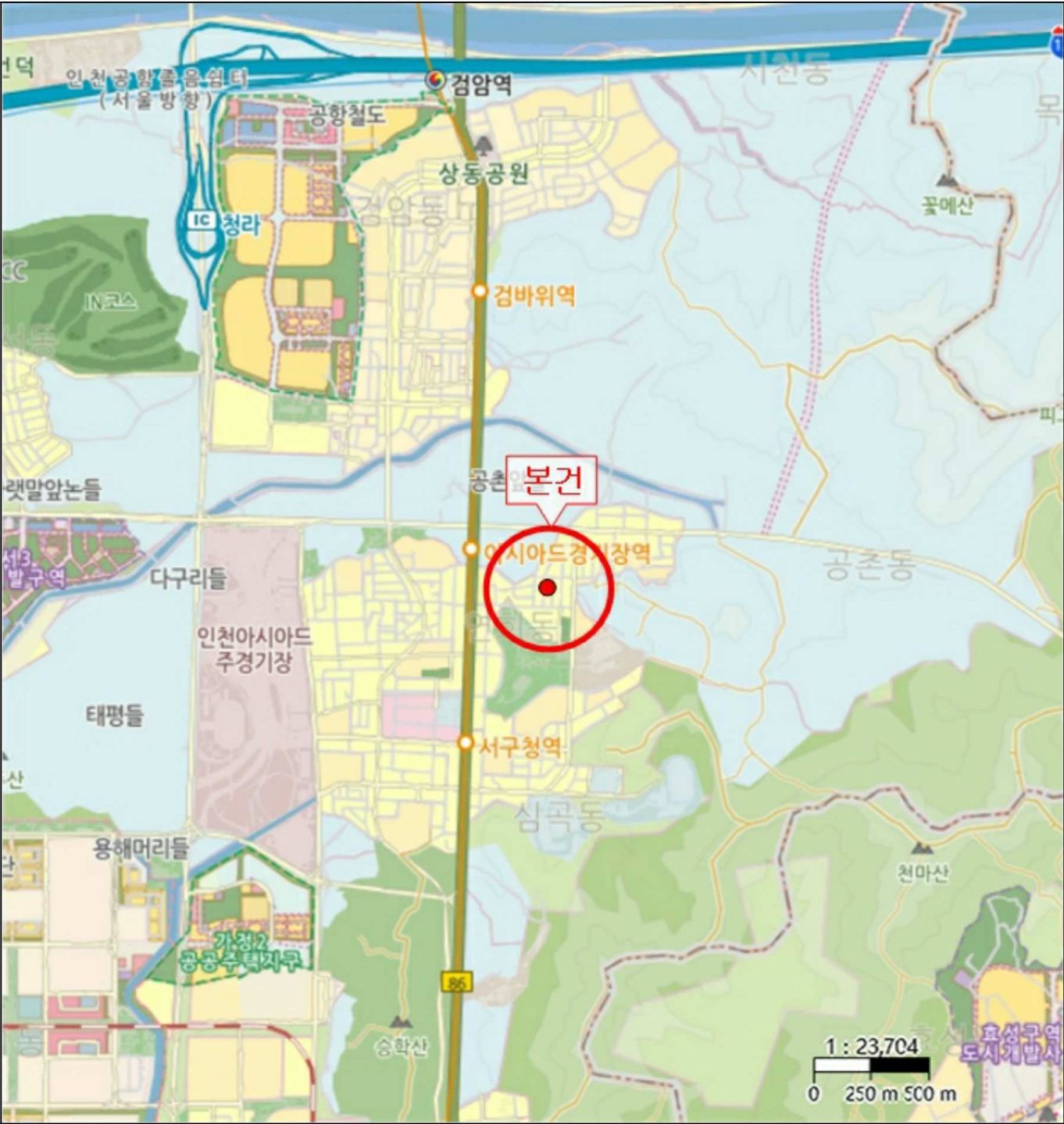
9. 임대관계 및 기타

-. 본건 임대관계는 미상임.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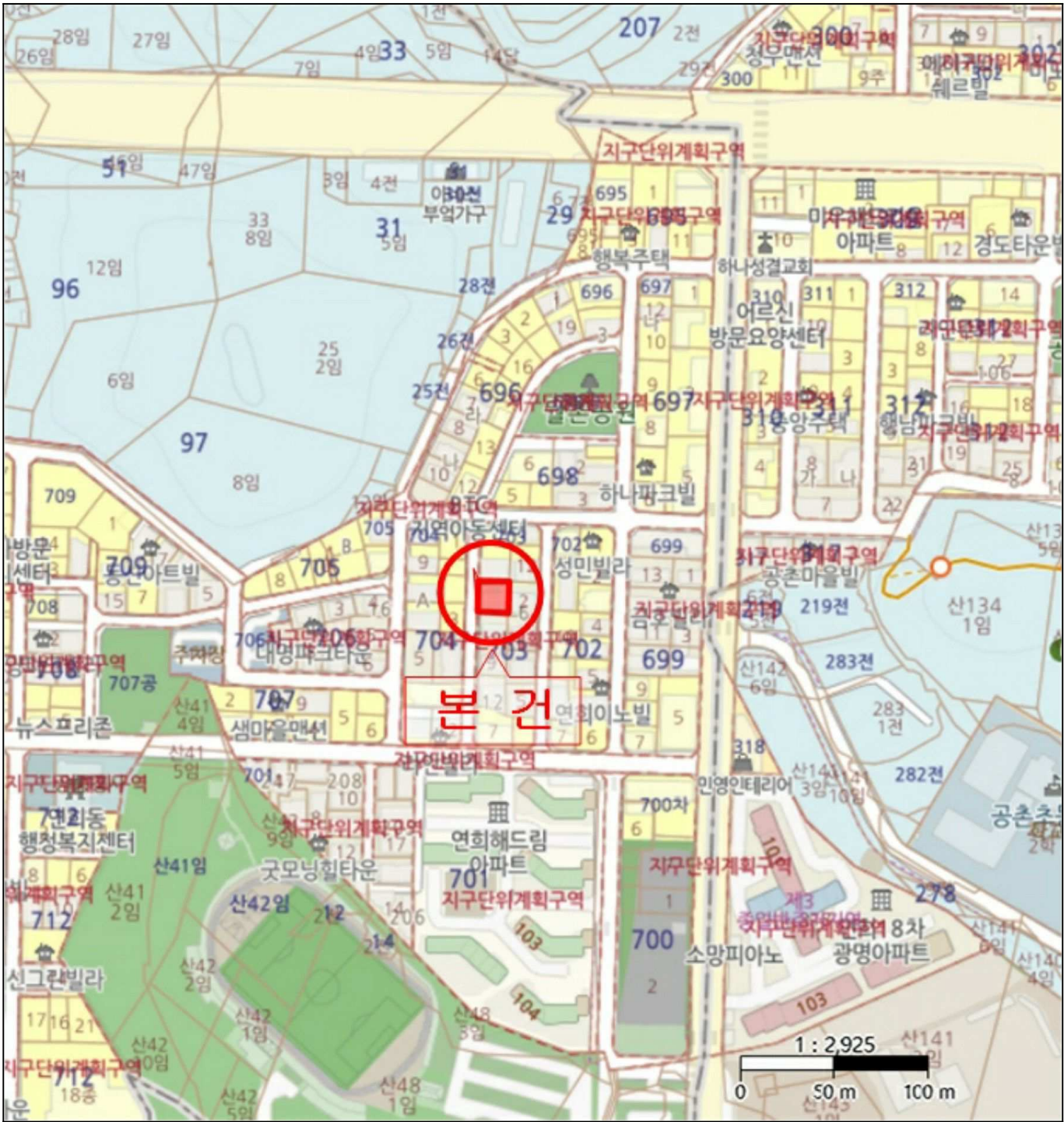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03-11 대명파크타운 제1층 제102호
-----	--------------------------------------



위 치 도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03-11 대명파크타운 제1층 제102호
-----	--------------------------------------



건 물 개 황 도

S : 축적없음

호별배치도



본건 대명파크타운(9동) 제1층 제102호

사 진 용 지



본건전경



본건전경

사 진 용 지



주위전경



출입구전경